

##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건

의안 번호	142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12. 5.  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 및 시행('12. 4. 10)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 개정 및 시행('17. 9. 19)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
- 1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)
  - 2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  - 3) 금회 보고: 79건(도로 73, 주차장 1, 공원 2, 공공청사 3)
- 나.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
- 1)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: 90건(도로 83, 주차장 2, 공원 2, 공공청사

3)

## 2) 단계별 집행계획

- 1단계(3년 이내 시행): 11건(도로9, 공원2)
- 2단계(3년 이후 시행): 79건(도로74, 주차장2, 공공청사3)

## 3. 해제절차

가. 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  
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  
(도시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  
다) 제출

나. 해제를 권고받은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  
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  
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

※ 특별한 사유 :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 
함

## 4. 근거법규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제85조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제95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미집행도

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보고 후  
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

나.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

## 근 거 법 규

###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 <개정 2011.4.14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, 2013.3.23., 2013.7.16.>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 <신설 2011.4.14.>

⑤ 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

가 없으면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4.14.>

[전문개정 2009.2.6.]

[제목개정 2011.4.14.]

[시행일:2012.7.1.]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
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

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9.2.6.]

[시행일:2012.7.1.]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##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2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

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·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2.29., 2009.8.5., 2012.4.10., 2013.3.23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·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

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 <신설 2012.4.10., 2014.11.11.>

1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)

2.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
3.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 중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2.4.10., 2014.11.11.>

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(도시·군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<신설 2012.4.10.>

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

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4.10.>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4.10.>

⑦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·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4.10.>

[제목개정 2012.4.10.]

제95조(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2.4.10., 2017.9.19.>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·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.>

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,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1.>

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2.4.10.>

부칙 <대통령령 제23718호, 2012.4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.

제9조(장기미집행 도시 · 군계획시설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)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또는 군수는 이 영 시행 당시 관할 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 · 군계획시설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 · 군계획시설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(按分)하여 할 수 있다.

### 3. 「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

제58조(권한위임)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 · 군수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09.11.5>

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.

#### ※ 권한위임사무

2.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다목 중 다음의 사무(단, 위임 사무중 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)

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무

- 교통시설 : 도로(폭 20m 미만의 도로)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,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
- 공간시설 : 광장(20m 미만에 접한 교통광장과 미관광장에 한함), 공원(어린이공원 · 소공원에 한함), 공공공지
- 유통 · 공급시설 : 수도(송 · 배수시설에 한함), 전기공급설비, 가스공급설비, 방송 · 통신시설, 공동구, 시장
- 공공 · 문화체육시설 : 학교(중학교, 초등학교, 유치원에 한함), 운동장, 체

육시설(골프장 제외), 공공청사(구·군청, 경찰서,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국 등 구·군단위 청사에 한함), 문화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

- 방재시설 : 하천(소하천에 한함), 유수지, 방화설비, 저수지(농업용수에 한함), 방풍설비, 봉수설비, 사병설비, 방조설비
  - 보건위생시설 : 화장장, 공동묘지, 도축장, 장례식장, 종합의료시설, 납골시설
  - 환경기초시설 :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), 폐기물처리시설, 폐차장
10.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,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(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)
15.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(도시계획 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)